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의와 방향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 토의하기에 앞서, 토론에 필요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도적 개입의 가능성이란 단순히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입의 일차원적 실행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본 토론에서 언급되는 인도적 개입을 행하는 주된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인도적 개입은 국제법 혹은 국내 정치적 상황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주도로 인도적 개입을 감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본국의 인권문제를 인식 및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정부의 개선 의지가 있다면 일반적인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만으로도 인권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나, 자발적인 개선 의지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러한 인도적 지원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현재의 북한 정권의 행보를 고려한다면,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의미 할 것이며 한국 정부가 감행한 과거의 인도적 지원 또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발제문에서 언급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인도적 개입은 지원된 자원과 물자가 인권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게 강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된 자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와 실현 가능성은 북한 정부의 폐쇄성과 반발성, 그리고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북한 정부의 폐쇄성과 공격성을 고려하였을 때, 인도적 지원과 개입의 강제가 국제법적으로 타당할 지라도 국내와 국제적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개입으로 판단될 것이다.

인도적 개입과 개입의 가능성을 위와 같이 정의하였을 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인도적 개입의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인도적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북한인권과 정부의 실태

과거부터 국제사회는 크게 핵 보유와 인권 문제로 북한에 개입해왔다. 하지만 과거 북한 정권의 행보와 태도를 고려해보았을 때 당국은 타국의 개입에 대체로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현재까지 존재해왔던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개입은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였으며 나아가 북한 내에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북한은 타국의 개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주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을 하며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1992년 8월 제44차 UN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거론된 이후 제 46차, 47차, 49차, 그리고 50차 UN인권소위원회를 거듭하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결의안을 자신들의 자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국제인권규약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지속된 UN의 개입에 대해서도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응하였다. 나아가 북한에 권고된 국제인권규약의 설상할 이행, 인권분야에 있어 UN시스템과는 제한없는 협력, 그리고 인권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에서 인권분야의 전문적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태도 모두 폐쇄적인 태도로 거부하였다.

이후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문제삼고 2003년 말에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을 상정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한인권법은 국제사회의 대북적대감의 산물이며 북한에 대한 도발이라는 반응을 표시하였다. 더해 북한 현지 중앙통신에 ‘북조선 인권법안은 대조선 적대선언’이라는 논평을 실어 “인권은 곧 우리의 국권이다. 우리 인민이 어떤 정치체제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되려 미국이 인권유린의 원흉이며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역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 정부의 폐쇄성과 공격성에 더해, 북한의 인권 실태와 인권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를 고려해보았을 때, 북한 당국은 자국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인권 문제의 개선 능력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북한 당국은 소위 ‘우리식 인권론’을 주장하며 국제 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식 인권론’은 첫째, 사회주의 인권관과 주체사상의 결합으로 형성되어 집단주의, 계급성, 그리고 사회권을 강조한다. 북한에서 말하는 사람, 인민대중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집단주의 원칙이 깃든 용어이다. 집단주의에 입각한 북한식 인권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체제의 ‘개인’ 중심의 인권과는 다름을 강조한다. 김정일은 <김정일선집>에서 “참다운 인간생활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에서만 훌륭히 실현”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인권 개념은 주체사상과 결합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 보장을 위해선 인민대중이 당/수령과 결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낸다. 결국 인권은 수령의 통치에 대한 절대 충성을 통해서 얻는 대가로

해석되며, 이는 북한의 정치체계를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전락한다. 둘째, 북한 당국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를 견지한다. 이는 민족과 국가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고, 그에 따른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도 다르기 때문에, 인권 기준은 서로 다르게 설정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뒷받침된다. 셋째, 북한 당국은 주권원칙과 자주성을 강조하며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내정불간섭 원칙과 주권의 원칙에 입각해, 인권문제는 국가주권 내의 문제이며 국제 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는 내정불간섭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우리식 인권론’은 인권 문제 “개선”이 아닌,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당국은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외부”의 “간섭”이라 간주하며 폐쇄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자국의 인권 문제를 숨기고 개선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심지어, 인권을 집단주의의와 주체사상과 교묘하게 결합하고 이를 강조하는 논리는 북한 주민 개개인의 인권 보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인권 개선 의지는 커녕 인권을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한편, 북한인권백서(2021)를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살펴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는 주민의 생명권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이동 및 거주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은 선거에 참여를 하고는 있으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자유의지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평등권은 성분 및 계층 분류에 의한 차별로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경제적 요소로 인한 불평등의 증가로 침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이 지속되며 북한의 노동자들은 노동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인권의 열악한 실태는 북한 당국이 인권 문제를 개선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열악한 인권 상황은 당국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 실태는 당국이 인권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추정적 판단을 확실하게 해주는 객관적 증거이다.

북한의 인권 실태 및 인권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까지 북한에 적용되어온 제재를 보았을 때, 제재나 개입이 강화될수록 북한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더 많은 제재조치를 그의 정권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여 더 많은 핵 무기를 보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미국, 한국과 같은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더 호전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나아가 제재나 개입을 엘리트 층이나 정치층보다는 일반 가정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실제로 오랜기간 제재를 겪으며 2천 5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영양실조와 극심한 빈곤을 겪었지만 특권층과 정치층은 큰 영향을 받지 못했다. 국제 사회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자발적,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고, 인권 개선 능력이 결여되어있다면, 이러한 지원이 실제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과거 실행한 인도적 지원이 미미한 성과 혹은 실패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실효성은 물론이고 필요성 측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고해보아야한다.

인도적 개입의 국제법적 근거 (승민 & 태희)

인도적 개입을 위한 국제법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두가지 사안은 피지원국의 국제적 위상과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법 조문이 있다. 국제법적 흐름이 인권을 위한 개입을 정당화 및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받는 국가에 대한 추가적 정보 또한 함께 고려하여 개입의 정당성을 판단해야한다.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인식과 위상을 통해 해당 문제에 접근하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위험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제재 또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대북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대북제재결의 2321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한 가운데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만큼, 그 결의안이 UN헌장상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북제재결의안에는 여러가지 경제적 제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에 대한 항공기 및 선박 대여 금지, 대외 교역 상 각종 광물 수출 금지 및 더 나아가 각종 금융 제재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일체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설령 그 대상 품목이 UN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제사회가 ‘북한’이라는 집단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직적인 태도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이행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인도적 개입은 국제법적으로도 그 정당성이 결여된다. UN 헌장상의 의무는 그 어떤 국제법보다도 우선 적용될 정도로 우위에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국내 법률 보다도 우선 적용이 되는 것이 UN 헌장이기 때문에 헌장상의 의무는 UN 가입국들을 구속하는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 UN헌장 제25조를 살펴보면,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은 모든 UN 가입국들이 지켜야 하는 UN 헌장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 결의안에 위반하여 북한과 각종 대외 교역, 경제적 교류, 자금조달 등을 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특히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는 기존의 2270조의 석탄 수출금지 조항의 ‘민생목적은 예외’ 항목을 ‘연간 수출 가능한 석탄량 제한’으로 수정하면서, 사실상 더 강력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적 개입 뿐만이 아니라, 여러 무력적, 경제적 제재, 강제력을 동반한 선제적 조치는 ‘UN헌장 제 7장 41조, 42조’에 의거하여 오직 UN의 안전보장이사회만이 결정하여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개입은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하여 오로지 국제기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UN 헌장 2조 3항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을 암시하며, UN헌장 제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에 관한 조치를 적시하고 있다. 한편, UN헌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UN이 제시하는 주권 존중의 규범과 북한이 강조하는 자주권 존중이 상호 부합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는 UN이 북한이라는 집단을 하나의 ‘주권’을 갖춘 나라 이자 국제적 사회화가 가능한 집단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할 때는 국제법을 근거로 UN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UN 헌장에 입각하여, 북한의 변화를 위해 제도적 사회화 이론이 제시하는 상호작용의 메커니즘 등은 가능할 수 있어도, 한 국가의 독자적인 인도적 개입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인도적 개입은 국제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보아,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또한 발제문에서 언급된 국제법적 근거로는 브뤼헤 결의와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국제적 구호원칙이 있다. 브뤼헤 결의안은 국제법학회의 회의록으로, 국제법이 자연재해 및 기술에 의한 재난 상황에서의 구호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결의안은 국제적 구호를 필요로 하는 재난의 종류를 자연재해, 기술에 의한 재난, 그리고 내란을 비롯한 국내외적 무력충돌에 의한 재해로 규정한다. 발제문에서 언급된 인권 문제로는 식량, 경제, 의료, 정치사회적 문제가 있으나, 이는 모두 브뤼헤 결의안에서 언급된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을 뿐더러, 브뤼헤 결의안 또한 국제법이 아닌 국제법학회의 회의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브뤼헤 결의는 국제법의 방향성을 제공해준 것에 그치고, 실질적인 국제법적 근거로 사용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구호원칙은 재난 상황에서의 인도적 지원과 구호를 원칙으로 하나, 이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는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개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입은 국제사회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부정한다.

인도주의적 개입 및 보호책임 적용 가능성 분석

위의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소위 주권을 무시한 인도적 지원 강제와 모니터링은 북한의 적대적 태도와 개선의지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제법적 근거가 박약하여 개입 필요성의 기준 또한 모호하다. 인도적 개입이 성공하려면 평화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지원 강제와 모니터링은 북한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정당성과 방향성을 확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흐름 주도가 아닌 한국 내부 활동의 확대 및 국민공감대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UN은 북한 방문, 인권실태 파악, 인권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북한의 각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은 엄연한 UN회원국이자 국제인권 비준국이면서도 인권보고서 제출을 내정간섭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들은 민족 공동체라는 당위성과 지원에 대한 진정성을 기반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하여 국제사회에 알리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각종 지원과 경제협력 등으로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인권을 매개로 한 접촉은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적이라는 명제 아래 강제성을 띄는 개입을 주도하고 북한의 저항에도 북한인권실태 조사 운영을 확대하는 등

대치중인 남북간의 사태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일 활동에 대한 국민공감대 또한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한국의 주도 아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인도적 개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하는 인도적 위기에 관해 국제사회가 공감해야 한다. 특히 타국의 주권 침범은 국제사회가 이것이 인권을 구하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이라고 판단할 때에만 용인된다. 따라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에는 이것이 개입을 요할 만큼 심각한 것인지 가능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동일한 시각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들과 그 국가들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위기의 심각성과 개입의 방향성을 하나로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UN평화유지군의 성격에 비추어보았을 때 인도적 개입은 피개입국의 극악한 인권상황, 동의성, 중립성, 그리고 자위성의 조건들이 지켜져야 그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북한의 인권문제같은 경우에는 인도적 개입의 주체가 동의성을 받거나 조사를 주도한 대한민국 정부가 중립성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기때문에 극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과 자위성만 가지고 인도적 개입을 진행하는 것은 인도적이지 못한 일반적 형태의 개입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여도 개입을 요할 만큼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북한이 내란이나 재난에 의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일이 없어 개입의 방향성도 분명하지 않기에 국제기구가 강제성을 지닌 활동을 전개하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모호한 상황에도 심각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국제기구는 “보호책임”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북한의 문제에는 적용 가능성이 극히 낮다. 보호책임은 일어나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해 해당 국가에게서 별 다른 요청이 없더라도 국제사회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보리 결의를 통해 해당국가를 보호할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다. 허나, 보호책임 추진의 선례인 리비아와 코소보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보호책임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위, 무차별 인권 유혈 진압, 내란, 혹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전달 등 국제사회의 동일한 시각을 유도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 계기에 의한 UN 주도 경고와 대응책임 등의 과정과 준비기간이 국제사회가 북한주민 보호를 목적으로 접근하고 해당 사건에 개입한다는 명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 준비기간 및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보호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UN 안보리 결의안이 필요한데, 시리아의 사례처럼 상임 이사국과의 이해관계 또는 국가이익에 반할 경우 개입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시각”을 이룬다 하더라도 상기한 이해관계 충돌의 이유로

성공적인 보호책임의 추진이 어렵다.

초국경 혹은 탈국경의 가치가 전세계적 연대의 가치로 인식되어가고 있는 시대흐름에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국제기구가 아닌만큼 비정부기구는 지원물품의 올바른 전달을 강제하거나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없다. 의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여전히 구호단체가 주권국가의 내정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국제법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조에의 방주 사건 등에서 보인 인도주의 구호의 부작용 사례로 보았을 때, 되려 북한이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경계하고 감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외교적 선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구호물자 혹은 인력의 접근을 정치적인 의도로 방해하고 금지하는 일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꾸준한 지원을 통해 인권침해국가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를 종결시키도록 종용하는 것 역시 성공하지 못하였다.

많은 이들이 인도주의 구호라는 도덕적 개념이 국제사회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차치할 수 없는 각 국가들 간 이해관계 충돌 문제와 그에 따른 국제기구 방향성의 부재, 비정부기구의 명분 부재로 인하여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개입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강제력을 행사할 방향성, 합법성, 그리고 정당성 부족이 국제흐름을 이용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김상기, 김근식."북한의 국제적 사회화 전망."국제정치논총55.2(2015):191-224.

김진우. (2019).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조건 및 이행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이무철. (2011).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현대북한연구, 13(1), 144-187.

이지현. (2012). 한국의 대북한 인도적 개입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오경섭, 홍석훈, 홍제환, 정은미, 이지순. (2021).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유석진. (2003). "인도적 개입"과 한반도 유사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정일. (2012). 김정일전집. 조선로동당출판사.

국제법 학회. (2003). "제 16회 인도적 지원 위원회"

전우정. (2006). "북한인권법에 대한 검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버클리 법학대학

Albert, E. (2019, July 16). *What to know about sanctions on North Kore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Retrieved from

<https://www.cfr.org/backgrounder/what-know-about-sanctions-north-korea>.

North Korea 2020 archives. Amnesty International. (2021). Retrieved from

<https://www.amnesty.org/en/location/asia-and-the-pacific/east-asia/north-korea/report-korea-democratic-peoples-republic-of/>.

World Report 2020: Rights Trends in North Korea. Human Rights Watch. (2021).

Retrieved from <https://www.hrw.org/world-report/2020/country-chapters/north-korea#>.